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## 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

1. 사건번호 2015구합72153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취소와 관련입니다.  
2. 우리구 삼선1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삼선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소송현황

1) 사건번호(사건명) : 2015구합7215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취소

2) 당사자

- 원고(항소인) : 삼선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피고(피항소인) : 성북구청장

3) 항소취지

- 피고가 2015.5.29.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나. 응소방침

1) 답 변 서 : 추후 제출예정

2)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

- 소송대리인 : 우리구 자문변호사 중 선임(기획예산과 선임)

- 본 사건은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 분양된 세대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(2014.7.24. 선고2013헌가28)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삼선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소송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성북구의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,

-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 불합치결정을 하여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한 사항으로,

-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원고가 사건의 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, 패소할 경우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, 우리구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○ 소송담당자

소속	직급	성명	비고
건축과	지방시설주사(건축)	이원재	재건축팀장
	지방시설서기(건축)	나대현	삼선제1구역담당

붙임 : 소장 1부. 끝.



주무관      **나대현**      재건축담당      **이원재**      건축과장      **임철수**      도시환경국장      **최성태**  
부구청장      09/16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*김병환**  
협조자      법제담당      **박기훈**

시행    건축과-2446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접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
우 02848  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  
전화 02-2241-2913    /전송 2241-654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[austin101@sb.go.kr](mailto:austin101@sb.go.kr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부분공개